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10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박영한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민병주, 서상열, 유정희,
이성배,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최민규,
허훈, 홍국표 의원(20명)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는 “일반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는 그 구체적 내용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일반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 확보 및 수의계약 체결 근거 마련, 계약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공유재산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합리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일반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이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2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사용하고 기존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생 략)</p> <p><u><신 설></u></p>	<p>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 조치) (현행과 같음)</p> <p><u>제2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 제28호에 따른 일반재산의 위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 형태 ·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u> <u>·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u> <p><u>1. 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 · 사용하고 기존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u></p>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입찰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방식과 관련된 사안으로 별다른 비용수반요인을 포함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재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